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완 개발 제안요청서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클린센터





2024.3.

사업담당자: 정보지원실 차장 김소옥

전화번호: 063-713-6482



목차

I. 사업 개요		3
1. 사업명		3
2. 사업기간		3
3. 사업예산		3
4. 사업목적		3
Ⅱ.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1. 추진 근거		3
2. 추진 경과		4
3. 추진 목표		4
4. 추진 방향		4
Ⅲ. 주요 사업내용		5
1. 목표 시스템		5
2. 주요 개발내용		5
Ⅳ. 사업 추진방안		8
1. 공단의 시스템 현황		8
2. 추진체계		8
3. 역할		8
4. 추진 일정		9
V. 제안요청 내용		9
1. 요구사항 총괄표		9
2. 기능 요구사항		10
3. 성능 요구사항		17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7
5.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8
6. 데이터 요구사항		18
7. 테스트 요구사항		21
8. 보완 요구사항		22
9. 품질 요구사항		24
10. 제약사항		24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27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0
VI. 일반사항		31
1. 제안 자격		31
2. 사업자 선정 방법		32
3. 제안요청 설명회		32
4. 입찰 참가(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32
5. 제안서 효력		33
6. 제안 관련 사항		33
[붙임]: 1. 기술 제안서 작성 순서 2. 기울 적용 계획/결과표 3. 제안서 정부 자료 서실 4.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5.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6. 프로젝트관리 지스템(PMS) 관리범위 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장 사업 기준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 9. 기급입찰 사유서	및 역할 다. 종합산정서	
9. 킨급힙찰 사유서 이 등이 되고 말고	P 1	

I 사업개요

- 1. 사업명: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완 개발
- 2.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사업 기간 선정 기준 【붙임7】에 따른 사업임
- **3. 사업 금액:** 415,977,877원(부가가치세 포함)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기능점수방식)
 - ※ 사업 금액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사업목적

『사업장 사회보험료(두루누리·가사근로자) 지원』 고시 개정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적기에 개발·완료하여 제도 안정화 도모 및 차질 없는 연금 업무지원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П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948(2023.12.29.)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등 개정 통보"
- 보험료지원부-547(2024.3.7.)호 "2024년도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2. 추진 경과

- 연금보험료 지원 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 '12.7월
- 지원 제외, 환수금 충당 추가 및 유지보수: '13년 ~ '15년
- 체납업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16년
- 재산자료 종합소득자료 구축 및 유지보수: '17년
-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18년 ~ '23년

3. 추진 목표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적기에 개발· 운영하여 시스템 안정화 및 업무처리 효율화 도모

4. 추진 방향

- 現 시스템 운영 및 대규모의 프로그램 개발·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정보지원실 자체 인력과 외주용역 개발자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시스템 개발 추진
- **정보지원실과 가입지원실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문제점 개선
- 정보화사업 프로세스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성 강화
 - 사전 조사, NIPA 발주지원 서비스, 조달청 e-발주시스템 수행

주요 사업내용

1. 목표 시스템

Ш



2. 주요 개발내용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의 소득*관련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 소득: 기준소득월액, 종합소득금액, 재산 등
 - 고시 개정 및 법·지침 기준을 반영한 소득 관련 가입자 지원 제외 및 검증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소득에 대한 지원 제외 기준 일원화를 위한 개발 및 보완
 - · 일용, 상용, 연 또는 월 작업 기준 변경
 - 지원 결정 관련 대상자 판단 구축 보완(국세청 종합소득 연 작업)
 - · 종합소득 상한으로 지원제외 시 직전월 소급 지원제외 프로그램 보완
 - 매년 1월 말일 기준에 계속 지원 사업장으로 변경의 경우 징수 고지 예정 및 실지원 생성될 수 있도록 개발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신규가입자 판단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규모, 신규가입자 판단에 대한 고시 개정 및 업무 지침을 기준으로 기존 판단기준 유지 및 재판단 등 자료 검증
 - 재신청 사업장 등 제외 처리에 대한 기준 추가 및 변경 시 반영
- 사업장 동일성 인정기준 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탈퇴 된 사업장 및 가입자 계속 지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신규가입자 인정기준 보완에 따른 지사 신청(증빙서류 추가), 본부 담당자 확인 처리 시스템 구축
- 동일성 인정된 근로자의 지원율 변경되는 대상자 관리 시스템
 - · 지원율 변경 대상자를 자격 마감에서 반영하여 근로자 지원 결정 및 지원 제외 처리

○ 일용근로자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자격 및 징수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상용·일용 사회보험료 소급 지원에 따른 자격·징수 개발 및 보완
 - · 직전월 소급월에 대한 상용이 미지원 된 경우 제외 프로그램 보완
- 일용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소급월(36개월 초과 판단) 결정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실태조사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실태조사 결과등록에 따른 결과 통지 이력 관리(평생고객이력)
- 실태조사 안내용 서식 출력 및 재전송 기능 구현 등 개선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원부, 증명서, 모바일 등 시스템 보완

- 사업장 및 가입자 자격·징수 원부 프로그램 보완
- 사업장 및 가입자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가입내역 안내서 등 보완
-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안내문 통합발송(모바일, 카카오, MMS, 국민 비서알림 서비스 등) 개발 및 보완

○ 고시 및 법·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장 연금보험료 징수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징수 고지, 환수, 결손처분 프로그램 보완
- 과오납금, 차감 잔액, 공제 잔액, 상계충당 프로그램 보완
- 지사, 일, 월, 년, 수시 작업과 화면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징수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지사 제안사항 및 지사 요구사항 화면 기능 반영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통계 및 검증시스템 보완

- 고시 개정에 따른 자격·징수 통계 및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지원 결정, 징수결정, 실 지원, 환수 등 각각의 업무에 대한 체계 적인 검증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지사, 일, 월, 년, 수시 작업과 화면 등 연금보험료 지원 종류별 검증 및 통계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지원 확대에 따른 체납처분 시스템 고도화

- 고시 개정 및 지원 종류 확대에 따른 체납처분 프로그램 보완
- 체납처분 종합원부(환수, 체납처분, 결손처분내역)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미납자 프로그램 보완개발
- 환수금 시효완성 예정 사업장 명부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재산 조사, 납부독려관리, 체납처분 승인 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압류 등 집행/해제관리, 개인회생관리, 법원경매관리, 배분금전 관리, 부동산압류, 자동차 전자촉탁, 예금채권관리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차세대 통합플랫폼에 신규 및 보완사항 적기 반영

- 2024년 사업 기간에 적용한 자격, 징수, 연계, 통계 등 시스템 신규 및 보완내용 적시 반영
-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차세대시스템 자격 테이블설계 변경됨

○ 차세대 통합플랫폼에 사업장 동일성 인정기준 시스템 구축

- 지사·본부에서 동일성 인정에 따른 입력 및 확인 시스템 개발
- 동일성 인정에 따른 가입자 지원율 판단 관리시스템 개발

○ 2025년 고시 개정 사항 자격 및 징수 사전 반영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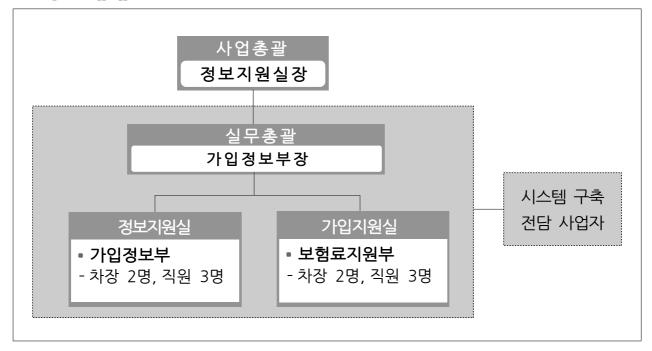
- 고시 소득 및 지원율 변동, 지원 기간 상한 적용 등
-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율 및 기존·신규 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 대상 일괄 적용 처리
- 2025년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징수프로그램 보완
- 공단 및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 징수는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고지, 수납, 정산, 충당 및 공제, 환수, 체납, 결손처분을 포함

₩ 사업추진 방안

1. 공단의 시스템 현황

□ 국민연금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인프라(H/W, S/W 등) 현황은 입찰 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 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17조 참고

2. 추진체계



2. 역할

	구분	주요역할
	사업총괄	◉ 사업관리 총괄
	실무 총 괄	◉ 사업관리 실무 총괄
실 무	정보지원실 (자격 2명, 징수 3명)	■ 現 시스템 분석 및 설명, 개발 단계별 산 출물 검토 ■ 프로그램 테스트 및 자료 정확성 검증
· 자	가입지원실 (보험료 지원부 5명)	■ 전산 개발 세부 기준 수립 및 제시 ■ 개발화면 테스트 및 자료 정확성 검증
전담 사업자		◉ 프로그램 개발(분석/설계/구현/테스트)

3. 추진 일정

□ 세부 추진 일정

7 8		2024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관련 부서 검토 등)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이후(분석·설계)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 세부 추진 일정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기능점수 규모는 833.5FP로 해당 규모는 분석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긴급입찰공고 추진 : 【붙임 9】 참조

Ⅴ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소계
계		48
기능 요구사항(SFR)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한 것	16
성능 요구사항(PER)	목표 시스템의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목표 시스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목표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데이터 요구사항(DAR)	정보시스템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양질의	7

구 분	설 명	소계
	데이터를 확보·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할 것	
테스트 요구사항(T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보안 요구사항(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품질 요구사항(QUR)	시스템의 기능과 프로젝트 관리측면의 품질보증방안	2
제약사항(COR)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 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3

2.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지원 결정 및 지원 제외자 관리
	정의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종합소득금액 상향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고시 개정 및 법·지침 기준을 반영한 재산, 종합소득, 재산 관련 지원 제외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소득에 대한 지원 제외 기준 일원화를 위한 개발 및 보완 - 일용, 상용, 연 또는 월 작업 기준 변경 ○ 지원 결정 관련 대상자 판단 구축 보완(국세청 종합소득 연 작업) - 종합소득 상한으로 지원 제외 시 직전월 소급 지원 제외 프로그램 보완 ○ 매년 1월 말일 기준에 계속 지원 사업장으로 변경의 경우 징수 고지 예정 및실지원 생성될 수 있도록 개발
산	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	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	사항 명칭	지원율 기준 관리
	정의	신규·기존 판단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사업장 규모, 신규가입자 판단에 대한 고시 개정 및 업무 지침을 기준으로 기존 판단 기준 유지 및 재판단 등 자료 검증 ○ 재신청 사업장 등 제외 제외에 대한 기준 추가 및 변경 시 반영 ○ 동일 법인 등 묶음 사업장 근로자의 자격 변동사항에 따른 신규 및 기존 판단확인 할 수 있는 조회 개발 - 분리 전출입 지원율 판단을 위한 조회 화면 신설로 동일 법인 등록번호 사업장가입자의 이력 조회가능한 화면 신설
산	└ · 출 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	사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	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	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	사항 명칭	사업장 '동일성 인정' 관리
	정의	사업장 동일성 인정기준 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고시 개정 및 법·지침 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탈퇴 된 사업장 및 가입자 계속 지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신규가입자 인정기준 보완에 따른 지사 신청(증빙서류 추가), 본부 담당자 확인 처리 시스템 구축 ○ 동일성 인정된 근로자의 지원율 변경되는 대상자 관리 시스템 개발 - 지원율 변경 대상자를 마감에 반영하여 근로자 지원 결정 및 지원 제외 처리
산	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	사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	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	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상용·일용근로자 사업장 사회보험료 소급 지원관리
	정의	사회보험료 지원 소급 지원에 대한 자격 및 징수시스템 개발 및 보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징수는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고지, 수납, 정산, 충당 및 공제, 환수,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포함 ○ 고시 개정 및 업무 지침을 반영한 상용/일용근로자 소급 지원 개발 및 보완 ○ 상용・일용 사회보험료 소급 지원에 따른 자격・징수 개발 및 보완 - 직전월 소급월에 대한 상용 지원예정금액이 생성되었으나, 사업장 미납인 경우 실지원(직전월 포함) 제외 여부 프로그램 보완

		○ 일용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소급월(36개월 초과 판단) 결정에 따른 보완
		○ 사회보험료 지원 중복예정자 삭제 전에 지원 제외 프로세스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	나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나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형	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시	나항 명칭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법령 및 지침 개정 사항 관리
	정의	2025년 고시 개정 및 법·지침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및 화면 보완사항
요구		○ 2025년 고시 개정 및 연금법 개정에 따른 소득상한액, 재산 및 근로, 소득금액 고시 상한 금액 적용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고시 개정 시에 따른 보험료 지원율 및 기존/신규 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 대상자 일괄 적용 처리
20		○ 공단 지침 및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에 따른 지원관리시스템 보완
		○ 지원율 및 기존·신규 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관리 시스템 보완
		○ 지사, 일, 월, 년, 수시, 화면 등 보험료 지원(일용근로자 등)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산·	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메뉴얼
요구시	나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시	나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형	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시	나항 명칭	연금보험료 지원 사후관리
	정의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실태조사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고시 개정 및 업무 지침을 반영한 사업장 실태조사 개발 및 보완 ○ 실태조사 결과등록에 따른 결과 통지 이력 관리(평생고객이력)
20		○ 실태조사 안내용 서식 출력 및 재전송 기능 구현 등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징수 관리
요구	정의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 및 법·지침 개정에 따른 징수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징수는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고지, 수납, 정산, 충당 및 공제, 환수,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포함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징수, 상계충당, 과오납금, 공제잔액 시스템 보완
		│ ○ 시ㅂㅇ 시커스컴프 시전 근단 OT, O시중O, 커스目ㅁ, O세인픽 시스템 트린

		○ 신규·기존 변경에 따른 징수 반영 일괄처리 프로그램 개발
		○ 반환확인(취소), 지급결정(취소) 및 이체 처리 프로그램 보완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별 기금관리를 위한 통계 프로그램 개발
		○ 징수 검증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징수 통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산출	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시	l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형	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시)항 명칭	환수금(과오납금) 관리
	정의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환수금(과오납금) 시스템 개발 및 보완사항
		○ 연금보험료 지원 과오납 상계충당 이력 화면개발
		○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환수 고지 및 수납 반영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에 따른 환수 프로세스 정리
		○ 환수금 개선에 따른 테이블 변경 및 신규 테이블 생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요구		○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반환확인(취소), 지급결정(취소) 개발 및 보완
사항		○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이체 처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부당이득 환수금, 과오납 충당 처리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공제잔액 환수금 충당 및 이체 처리 개발 및 보완
		○ 지사 화면 기능 추가 및 업무 제안 요청사항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별 환수·과오납 기준 변경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연금보험료지원 환수 결정(경정) 본부용 보정 및 검증시스템 개발
		○ 지사, 일, 월, 년, 수시 작업 중 연금보험료 지원 환수금(과오납금 포함)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시	· 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징수결정 관리
요구	정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장 징수 지원 결정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사항
사항		※ 징수는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고지, 수납, 정산, 충당 및 공제, 환수, 체납처분,
상세 성명	세부내용	결 손 처분을 포함
설명		○ 자격 지원율 변경 징수 반영 일괄처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지사, 일, 월, 년, 수시 작업 중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장 징수결정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별 기준 변경에 따른 조회프로그램 보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시	l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시	l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시	l항 명칭	체납처분 관리
정의		사업장 지원 확대에 따른 체납처분 시스템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고시 개정 및 지원 종류 확대에 따른 체납처분 프로그램 보완 ○ 체납처분 종합원부(환수, 체납처분, 결손처분내역)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미납자 조회프로그램 보완 개발 ○ 환수금 시효완성 예정 사업장 명부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재산 조사, 납부독려관리, 체납처분 승인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압류 등 집행/해제관리, 개인회생관리, 법원경매관리, 배분금전 관리, 부동산압류, 자동차 전자촉탁, 예금채권관리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환수금 개선에 따른 테이블 변경 및 신규 테이블 생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지사, 일, 월, 년, 수시 작업 중 체납처분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지사, 일, 월, 년, 수시 작업 중 결손처분 시스템 개발 및 보완
A L á		
	출정보 ŀ항 출처	요구사항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2024년도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	6 로시 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	항 고유번호	SFR-011
) <u>- 11년</u> - 항 명칭	징수 업무 기준 관리
	정의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에 따른 징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mark>징수는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고지, 수납, 정산, 충당 및 공제, 환수,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포함</mark> ○ 2025년 연금보험료 지원 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징수 관련 프로그램 보완 ○ 징수(환수 및 체납처분 등) 업무 매뉴얼 등록 및 조회프로그램 개발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별 지원금 항목을 포함한 징수 금액 종합화면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시	l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형	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시	h항 명칭	차세대 통합플랫폼 시스템 관리
	정의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 · 징수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징수는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고지, 수납, 정산, 충당 및 공제, 환수,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포함 ○ 2024년 사업 기간에 적용한 자격, 징수, 연계, 통계 등 시스템 신규 및 보완내용 적시 반영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차세대 통합플랫폼 구조 변경됨 ○ 사업장 동일성 인정기준 개선에 따른 지사·본부에 입력 및 확인 시스템 개발 ○ 동일성 인정에 따른 가입자 지원율 판단 관리 시스템 개발 ○ 현 시스템과 차세대시스템의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 방법, 절차,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	 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시	l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시	l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형	· 고유번호	SFR-013
요구시	l항 명칭	통계 및 검증 관리
	정의	보험료 지원(일용근로자 등) 자격·징수 화면 기능 개선, 통계·검증 시스템 개발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정수는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고지, 수납, 정산, 충당 및 공제, 환수,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포함 ○ 고시 개정에 따른 자격·징수 통계 및 검증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징수 검증시스템 및 통계 개발 및 보완 ○ 자격변동 대비 보험료 지원별 환수 발생금액 비교 검증 프로그램 개발 ○ 지원 결정, 징수결정, 실 지원, 환수 등 각각의 업무 및 연결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지사, 일, 월, 년, 수시 작업과 화면 등 지원 종류별 검증 및 통계 개발 및 보완 ○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환수 관련 통계 추가 및 화면 기능 개선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별 기준 변경에 따른 조회프로그램 보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5 O.T.	
요구시	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2024년도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기능 요구사항
요구시	l항 출처	
요구사형	h항 출처 h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모바일 등) 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징수는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고지, 수납, 정산, 충당 및 공제, 환수, 체납처분,
		결손처 분을 포함
		○ 사업장 및 가입자 자격·징수 원부 프로그램 보완
		○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종합화면 프로그램 보완
항		○ 사업장 및 가입자 제증명(내역안내, 소득증명 등) 프로그램 보완
상세	шншо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 및 법·지침 변경에 따른 조회프로그램 보완
설명	세부내용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문 통합발송(모바일, 카카오, MMS, 국민비서 알림서비
		스 등) 추가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 및 연금법 개정에 따른 각종 통지서 서식 보완
		○ 사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결정, 환수, 환수 취소 마감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오류(별도처리)사업장 관리 및 마감배치 분할 프로그램 보완을 통한 마감
		시스템 자동화
산	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시	사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형	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시	사항 명칭	자격 마감 관리
 요구사	정의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 월 마감 처리 및 검증
항	세부내용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결정, 환수, 환수 취소 마감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상세		- 오류(별도 처리) 사업장 관리 및 마감 배치 분할 프로그램 보완을 통한
설명		마감 시스템 자동화
산	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인터페이스 설계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요구시	사항 출처	2024년도 시업장 시회보험료 지원 시업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청, 보험료지원부
요구시	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형	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정의	지표 자료의 OpenAPI 제공 방식 확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 검토
		(오픈 API 연계가 없는 경우 하단 요구사항 생략 가능)
요구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시스
사항 상세 설명		템 구축, 운영 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
	세부내용	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타 시스템 간 연계가 없는 경우 하단 요구사항 생략 가능)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을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
		안 검토해야 함

		○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
		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
		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
		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산	출정보	
요구시	나항 출처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시	항 명칭	질의응답 속도 관리
요구사	정의	온라인 서비스 적정 속도 유지
항 상세	세부내용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시스템 화면의 적정 조회 속도 유지
설명	세포세증	- 화면별 적정 조회 속도는 공단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	출정보	성능개선계획서, 성능개선 결과서
요구시	항 분류	성능
요구사형	· 고유번호	PER-002
요구시	항 명칭	배치처리 속도 관리
	정의	대량 정기작업 적정 처리 속도 확보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마감 작업 소요 시간 단축 - SQL 튜닝,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적정 처리시간 확보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마감 작업은 5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징수(일괄 경정 고지, 사업장 정기고지, 차감 잔액 시스템) 작업 소요 시간 단축 - SQL 튜닝,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적정 처리시간 확보
산출정보		성능개선 계획서, 성능개선 결과서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장비

요구사 항 상세	정의	시스템 개발 장비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장비(노트북, 프린터 등) 이용시
		공단의 네트워크, 방화벽 등 정책을 적용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되고,
		사업종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설명		○ 개발에 필요한 환경 및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사용하며,
		전담 사업자가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산 출 정보		과업수행 계획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5.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시	항 명칭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요구	정의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용 서비스 개발
사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지사 증빙자료 등록 EDMS, 모바일 발송 등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개발 및 변경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세부내용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
요구사		여야 함
항 상세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설명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
		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
		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공단에서 기 수립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 수립하고, 공단이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

		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차세대 통합플랫폼 적용 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메타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관리시스템 관리항목
· ·		데이터 PAR 002
	; 고유번호 	DAR-002
요구시	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시스템 그층기가 도아 데이터 표준 과기를 이해 바아/버겁이려 표하나요 게나된고
요구사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항 상세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설명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하여 공단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이력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공단이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 차세대 통합플랫폼 적용 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음 표준용어사전, 표준코드정의서, 표준도메인정의서, 명명규칙정의서, 메타데이터관리시
산출	출정보	스템 관리항목
요구시	h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형	가 고유번호	DAR-003
요구시	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데이터 구조 설계와 관련하여 공단의 데이터 품질 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
		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관리항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 항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공단 및 시업전담자 등이 참여하여 시전에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
		여야 함
상세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설명	세부내용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모델
	 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형	· · 고유번호	DAR-005
	· · · - - - - - - -	데이터 구조 관리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u> </u>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074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 항		- 데이터구조 변경시 운영 중인 공단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야 함
상세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설명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공단이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 구조 변
		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차세대 통합플랫폼 적용 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음
산출	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관리항목
요구시	l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형	· ·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요구사 항		명시하여야 함.
앙 상세 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 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
		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
		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A L d	로거니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BR 및 프로파일 등록내역, 품질측정 결
신형	출정보 	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형	· 고유번호	DAR-007
요구시	하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요구사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의 목록 식별 및 개방데이터
항		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공단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상세		○ 메타데이터 현행화
설명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공단의 메타데이터관리시
		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λL±	를 정보	지원하여야 함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테이블 설계서,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된 시스템의 단위 테스트 수행
	세부내용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 테스트계획서, 단위 테스트결과서, 결함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된 시스템의 통합테스트 수행
	세부내용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 테스트계획서, 통합 테스트결과서, 결함 관리대장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시	항 명칭	정보보안
	정의	정보보안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
		기술식 ▶ 시스템 접근 및 행위 기속 보안 ▶ 신규 투입 및 철수인력 보안관리 프로세스 마련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개발 인력의 노트북 또는 PC의 USB사용 원천차단 (노트북 등 장비의 USB 포트락, 링크락 설치) ※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시 USB 포트락, 링크락 적용절차 - 공단에서 운영중인 USB포트락, 링크락 제작업체에 국민연금 버전으로 제작 사전요청 - 제작받은 링크락, 포트락을 공단 정보보안부 담당자를 통해 장비에 설치 - 사업종료 이후 공단 정보보안부 담당자를 통해 설치된 장비에서 해제 ▶ 보안교육 실시 : 정기 월 1회 이상(공단, 사업자), 수시 ▶ 보안점검 실시 : 정기(주 1회), 수시(보안점검 실시) ▶ 보안위규시 부정당업자 제제 조치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공단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붙임4]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공단 "보안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지침 적용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공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공단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름

산출정보		용역사업참여자 보안교육확인서, 용역사업 보안점검리스트, 보안교육 참석자명단, 수탁자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점검결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참석자명부, 수탁자 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형	·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의	개인정보보호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산출	출정보	보안 교육 참석자명단, 수탁자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점검결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참석자명부, 수탁자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요구시	h항 분류	보안
요구사형	· 고유번호	SER-003
요구시	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전담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개발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교육계획의 적정성 등을 제시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 사업자는 실업무 적용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후 운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 종료단계에서는 【붙임5】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표, 보안 취약점 진단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출정보	소프트웨어개발 보안교육 참석자명단, 보안 취약점 진단결과

9.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시	l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정의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하여야한다. ○ DB 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 하여야 함 ○ 테스트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모두 조치 완료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 력으로 인한 미 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계획된 일정에 영향 없이 결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제반 관리를 공단의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출정보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
요구시	하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절차
요구사	정의	백업관리 요구사항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로 만들어 결과 산출물 제시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10.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등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 반출 활용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제 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54조1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

		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이래 내용을 준수하여 이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공급자가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공단과협의하여야함 ○ 전담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가침해되지 않도록하여야하며, 이를 침해하여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A L d	えない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출정보 	과업수행 계획서
	항 분류	제약사항
) 고유번호 - 항 명칭	COR-002 작업 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등
<u> </u>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등
		○ S/W시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시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경비 등은 계약 금액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본 프로젝트의 전체적 관리는 공단의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상기 제안요청 내용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시 요망 제안서, 과업수행 계획서 제약사항 COR-003
요구시	·항 명칭 □ -:○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정의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데이터 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
산	· 출정보	제안서, 과업수행 계획서
요구시		계약사항
	· · · · · · · · · · · · · · · · · · ·	
요구시		정보화 표준 기침 준수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3.4.13.) 준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5호, '24.4.12.) 준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2022.5.12.)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5.8.) 준수
		○ 「장애인치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34호, 2023.1.28.)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3호, 2023.4.12.) 준수
		○ 정보시스템 설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
		2023-69호, 2023.9.27.) 준수
산출	출정보	과업수행 계획서
요구시	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시	l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형	강 고유번호	COR-005
요구시	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정의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0-7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
		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
요구사		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항		※ 위 괄호 내 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
상세 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
20		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산출	출정보	과업수행 계획서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정의	과업 착수 등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추진사항 보고 - 착수보고회: 계약 후 1개월 이내 - 완료보고: 본 용역 완료시점 - 정기보고(주간,월간 등): 매월 말 혹은 매주 등 - 기타보고(업무협의, 교육 등): 수시 ※ 각종 보고회 일정은 공단과 협의 후 결정하며 공단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T	
		반영 등을 위해 수시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사는 응해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범위, 사업추진체계, 산출물계획, 일정계획, 공정별 사업추진계획, 보고계획, 보안대책, 기술적용 계획표, 품질
		보증 방안, SW 사업정보 데이터가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의 경우에는 공단과 과업수행 업체가
		합의하여 확정함
		수행업체는 공단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함
산출	출정보	과업수행 계획서
요구시	l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형	강 고유번호	PMR-002
요구시	 항 명칭	일정 관리
	정의	일정 관리
		○ 본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주간, 월간, 정기 보고(착수, 최종보고 등) 등에 대한 수행계획 제시
요구사		○ 공단의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에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일정 및 공정을 관
항 /	세부내용	리하여야 함
상세 설명		-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관리범위 및 역할은 【붙임6】참조
20		* 차세대 통합플랫폼 적용 시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 개발 절차(분석-설계-개발-테스트-배포) 일련의 과정은 공단의 "IT
		개발 내부통제 시스템(ITACS)"을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차세대 통합플랫폼 적용 시 'ITACS' 변경될 수 있음
	출정보	과업수행 계획서, WBS,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착수보고서, 종료보고서
요구시	l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형	강 고유번호	PMR-003
요구시)항 명칭	의사소통 및 위험관리
	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요구사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항 상세 설명		│○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제안 단계에서 사│
		기 비서리그 데오 HLOLO 게이하 기
	세부내용	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할 것
설명	세부내용	- 사업지연, 공단과 전담사업자간 분쟁 발생,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공단 제도
	세부내용	- 사업지연, 공단과 전담사업자간 분쟁 발생,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공단 제도 변경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 등
	세부내용	- 사업지연, 공단과 전담사업자간 분쟁 발생,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공단 제도 변경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 등 ○ 인력의 변경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의 조치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지연, 공단과 전담사업자간 분쟁 발생,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공단 제도 변경에 따른 과업범위 변경 등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일정관리 계획서, 형상관리대장, 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시	 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산출물 관리 및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은 공단PMS에 등록하여야 함(등록된 산출물의 내용이 변경 되었 경우 즉시 현행화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 산출물 변경사유 발생 시, 공단에서 운영 중인 EAPortal 시스템(EAMS)에 정보화 자원 및 아키텍처 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함 ○ 사업 검수시 EAMS 및 PMS 현행화여부를 공단 PMO를 통해 확인 완료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 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각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활	 출정보	문서관리 계획서, 테일러링 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형	항고유번호	PMR-005
요구시	l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정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요구사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 자료로 관리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 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 부 필수 검토)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 해야 함. ※ 차후, 전자정부 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요청서, 사
		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과업수행 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계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구성
요구사 항	정의	공동수급 구성 안내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개념 정의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해야함 (*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가급적 주사업자가 인력의 50%이상을 투입하여 한다) ○ 컨소시웅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개념 정의 - 구성 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 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제시
산	출정보	과업수행 계획서

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업무 지원 및 사후관리
요구사	정의	현행 운영업무 지원 및 사후관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검수 및 사업 완료 후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원 방안 제시
산출	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요구시	하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형	· 고유번호	PSR-002
요구시	l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	정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에 의해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품질, 성능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산출	출정보	과업수행 계획서, 하자이행보 증증 권
요구시	하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형	· 고유번호	PSR-003
요구시	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정의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방안
요구사 항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공단 직원들이 정보화마인드 기반을 갖추고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훈련방안 제시 - 교육 훈련방안은 교육대상자(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등)별로 교육내용, 교재편성계획 등 제시 ○ 교재 및 장소확보 등 교육 시 소요 비용은 업체가 지원해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완, 비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Ⅵ 일반사항

1.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로 제안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 소지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한다. 단 아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있어 하도급은 불허함

2.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등 선정 및 협상실시
- 평가원칙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차등점수제*)와 가격평가점수(10점) 합산
 - 단, 협상 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 능력 평가젂수를 기준으로 함
 - *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자와는 협상을 하 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기술평가(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서 수행함

3.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설명회는 유선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4. 입찰참가(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나 제 출 처: 입찰공고문 참조
- 다. 제출서류 및 방법: 입찰공고서 참조(온라인 제출)
 - 정량 제안서, 정성 제안서, 발표 자료(제안요약서) 각 1부
 - 제안서는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작성 순서: [붙임1] 참조(제안서 작성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 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 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리공단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기술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등의 조치를취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기술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 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공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6. 제안관련 사항

가. 일반사항

- (1)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2) 우리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3) 사업추진

○ 우리공단은 선정된 전담사업자와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추진내용이 명시된 사업계약을 체결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4)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제안서 보상과 관련하여 총 사업예산이 20억 미만으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5)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제안시 전제조건

- (1)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동 등 현저한 사업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본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되어질 수 있으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기술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 토록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2) 개발 완료된 응용 소프트웨어 중 공단에 제공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공단과 공동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3)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
- (4) 제안사는 개발·구축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다. 제안서 작성 방법(권장사항)

- (1)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2) 제안개요에는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제반 사항들을 기술하여야 함
- (3)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4) 제안서는 A4표지 형태로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을 200쪽 내·외로 하며, 발표 자료 및 제안요약서는 20쪽 내·외로 함.
- (5)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조견표를 제시
- (6)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조견표로 작성하여야 함
- (7)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라. 제안서 평가

(1) 평가원칙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1.12.30.)』을 준용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2)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한도
		계	10
계획 부문 (10점)	경영상태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표4-1) 참조 ※ 조달청 평가	5
	유사분야에서의 수행 경험	· 용역 경험의 유사성 및 경험 (표4-2) 참조 ※ 수요기관 평가	5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 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적용

○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한도	
<u></u>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12점)	추진전략	· 사업 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 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7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3	
기술 및 기능 (23점)	보안 요구 사항	· 사업 수행 중 보안지침준수, 물적, 인적 보안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보안대책의 적정성 - 보안 체계의 적정성	4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수립되었는 기 평가한다.	6	
성능 및 품질 (12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8	
	품질요구사 항	·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품질보증 방법의 적절성 및 단계별 품질관리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 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6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	
		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	
(10점)		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일정계획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4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시험 운영	위해 필요한 단계별 테스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7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 - - 211 -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5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지원 (227년)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23점)	및 유지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7
	보수 지원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비상 대책	필요한 각종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4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적용
- ※ 평가점수 산출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름

마. 계약 방법

-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함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 ※ 기타 계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바. 연락처

- 사업 관련 : 정보지원실 가입정보부 김소옥 차장(063-713-6482)
 - 정보지원실 가입정보부 서문정 과장(063-713-6404)

(표4-1) 경영상태 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 기준(제9조 제3항 제1 호 관련)】

배점: 5점(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न्य
AAA, AA+, AA0, AA- A+, A0, A-, BBB+, BBB 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 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 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표4-2)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경험(배점: 5점)

- 대상 : 소프트웨어개발 또는 유지 보수 용역사업의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사업종료일 기준)의 계약 실적으로 사업금액 기준(VAT 포함)에 한함)
 - ※ 유사분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운영·재개발
-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2. 등급 구간별 평점은 제9 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 3.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그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 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하였으면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
-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8. 합병, 분할, 사업 양수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

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나.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목차]

-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순서
- 【붙임 2】 기술적용 계획/결과표
- 【붙임 3】 제안서 첨부자료 서식
- 【붙임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붙임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붙임 6】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관리범위 및 역할
- 【붙임 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붙임 9】 긴급입찰 사유서

[붙임 1]

정량적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 목차
I. 제안사 일반현황	1. 관련분야 사업실적 2.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 목차
1. 제안개요	1.1 제안 배경과 목적 1.2 제안 범위 및 목표 1.3 사업 추진 전략
2. 제안사 개요	2.1 사업수행조직
3. 시스템 구축	3.1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4. P/G 개발 및 디자인 개선	4.1 사업장 규모 판단 • 지원율 변동에 따른 지원 시스템 개발 및 보완 4.2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소득 관련 시스템 개발 및 보완 4.3 사업장 동일성 인정기준 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보완 4.4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시스템 고도화 4.5 일용근로자 지원기준 변경 관련 자격 및 징수 시스템 개발 및 보완 4.6 차세대 통합플랫폼에 신규 및 보완사항 적기 반영 4.7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통계 및 검증시스템 보완 4.8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원부, 증명서 등 시스템 보완
5. 사업관리 부문	5.1 사업관리 전략 5.2 개발조직 및 개발환경 구성방안 5.3 일정관리 방안 5.4 개발방법론 활용 방안 5.5 품질관리 및 보안 관리 방안 5.6 RISK 관리 방안 5.7 산출물 관리 방안 5.8 테스트 수행 방안 5.9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 방안
6. 지원부문	6.1 유지보수 지원 방안 6.2 업무운영 지원방안 6.3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방안 6.4 보안 및 비상 대책
7. 기타 사항	7.1 기술적용 계획표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적의 조정 사용

[붙임 2]

[V]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4.3.1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사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교시) ○ 행정건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해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제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성목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구분	항 목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항 목	즈	용계	획/결	라	부분적용/
구 분		적용	부분 적용	嘚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있도록 표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l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sqrt{}$	
220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sqrt{}$	
	- XHTML 1.0				$\sqrt{}$	
외부 접근 장치	- XML 1.0, XSL 1.0				$\sqrt{}$	
0 1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sqrt{}$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sqrt{}$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항 목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구 분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하고, 개발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린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sqrt{}$	
	- UDDI v3				$\sqrt{}$	
서비스 통합	- RESTful				$\sqrt{}$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sqrt{}$	
	- ebXML/BPEL 2.0/XPDL 2.0				$\sqrt{}$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sqrt{}$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sqrt{}$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ት	부분적용/
구 분	구 분 항 목		부분 적용	마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 l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는 임베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 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sqrt{}$	
네트워크	o 부가통신: VoIP					
	- H.323				$\sqrt{}$	
	- SIP				$\sqrt{}$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鸣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Megaco(H.248)				$\sqrt{}$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sqrt{}$	
	- UNIX					
	- Windows Server				$\sqrt{}$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Linux				$\sqrt{}$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sqrt{}$	
	- IOS				$\sqrt{}$	
	- Windows Phone				$\sqrt{}$	
	o DBMS					
	- RDBMS	√				
데이터베이스	- ORDBMS				$\sqrt{}$	
	- OODBMS				$\sqrt{}$	
	- MMDBMS				$\sqrt{}$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sqrt{}$	
소프트웨어 공 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7 H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qrt{}$					
o 데이터는 더 이터 품질 [:] 다.							
공하기 위하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 l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 ls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이						

	7 H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여야 하며 정안전부장 화 추진지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 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 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단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연계를 위해	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sqrt{}$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o 프로그래밍					
	- C	$\sqrt{}$				
	- C++					
프로그래밍	- Java					
	- C#					
	- 기타 (프로프레임)	$\sqrt{}$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데이터 교환	- SOAP 1.2					
네이니 뽀완	o 문자셋					
	- EUC-KR	$\sqrt{}$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sqrt{}$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마점용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기본 지침									
이를 근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checkmark								
o 보인	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sqrt{}$								
o 네트 기능	지공 보는 공동단시지공을 가난으로 해해야 한다. 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sqrt{}$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sqrt{}$								
관련 규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sqrt{}$								
11 0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sqrt{}$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	보보호	제품)							
	- PKI제품				$\sqrt{}$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sqrt{}$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sqrt{}$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sqrt{}$					
	- 메일 암호화 제품				$\sqrt{}$					
	- 구간 암호화 제품				$\sqrt{}$					
제품별	- 하드웨어 보안 토큰				$\sqrt{}$					
도입 요건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sqrt{}$					
및 보안 기준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 장된 제품				$\sqrt{}$					
준수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checkmark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	병우 토	L 안 적 합	합성 검	성증 필	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sqrt{}$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sqrt{}$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sqrt{}$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sqrt{}$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sqrt{}$					

	적용계획/결과			가	부분적용/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적용	마용	해당 없음	미적용시 사 유 및 대체 기술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sqrt{}$	
-	- 무선랜 인증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 스팸메일 차단				√	
-	- 서버 접근통제				$\sqrt{}$	
-	- DB접근 통제				√	
-	- 스마트카드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 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sqrt{}$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 호모듈 탑재 필수)				$\sqrt{}$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sqrt{}$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checkmark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sqrt{}$	
	- 가상화관리제품				$\sqrt{}$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1		1		

		2	석용계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부분 적용	마용	해당 없음	유 및 대체기술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sqrt{}$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sqrt{}$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sqrt{}$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sqrt{}$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sqrt{}$				
	- 암호지원	$\sqrt{}$				
	- 정보 흐름 통제	$\sqrt{}$				
	- 보안 관리	$\sqrt{}$				
	- 자체 시험	$\sqrt{}$				
백도어 방지	- 접근 통제	$\sqrt{}$				
기술적	- 전송데이터 보호	$\sqrt{}$				
확인 사항	- 감사 기록	$\sqrt{}$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sqrt{}$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sqrt{}$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sqrt{}$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checkmark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3]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등

서식 제 1호 업체현황 및 연혁

서식 제 2호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제 3호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제 4호 사업수행조직

<u>제1호 서식</u>

업체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화 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분종사기간	년 월 ~ 년	월(년	개월)	
관련분야 보유면허, 구축 등) 및 각 사본 제출	방법론 ISO 인증서, 기타	공공기관 및 글	국내외 표준기관	인증 면허
주요연혁(연월별 오름차순	·으로 10개항 이내 기재)			

[참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1부 제출

제2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_

주)

-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 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저	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인정 실적			
검토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u>제3호 서식</u>

		흥법 시행규칙 [ˈ	별 지 제2	28호서식]					_	
제 		· 소프	트위	웨어사	업 수	행 실	적 증	명서		
		회사명				법인등록변 사업자등록				
회시	나 개요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_			
		주 소								
제	출처					용 도				
참여	사업명									
				사업 수	행 실적 (총	총 건)				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		이행완료 여부
					~					
					~					
					~					
					~					
					~					
					~					
					~					
					~					
					~					
1	-	진흥법」제 행 실적을 증			은 법 시행구	구칙 제17조	제4항에 따	라 위와	같0	기 소프트
								년	월	늴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u>제4호 서식</u>

<u>사업수행조직</u>

1. 역할별 인원

주요 역할	인원	관련자료

[참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붙임 4]

<u>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u>

- ① 사업자는 국민연금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사업자는 [별표4]의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자는 사업수행중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5]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5] 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작속 감독자 교체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o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 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중 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교체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재발 방자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 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위규자 교체위규자 및 직속
보통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게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해당사업 참여자 전체 대상 특별 교육 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 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서면·구두경고 등 문책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 과 별도 부과
-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3. 사용자의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운용 현황
-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공단의 내부문서
-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11. 그 밖에 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 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부록 5)"에 따라 완전포맷 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공단 정보보안업무예규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 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공단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예규 등」반 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공단 정보보안업무예규」,「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별표 5】

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국민연금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탁자(이하 "수탁 업체명"이라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 사업을 "수탁 업체명"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 사업을 "수탁 업체명"에게 위탁하고, "수탁 업체명"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 업체명"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 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사업의 목적 및 범위) "수탁 업체명"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사업¹⁾을 수행한다.

- 1 업무 목적 기술
- 2. 개인정보 처리 항목 (필히 개인정보 전 항목 기재: 「-등」과 같은 표현 금지)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 업체명"은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 업체명"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는 "수탁 업체명"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5일 이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 업체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¹⁾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 업체명"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사업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수탁 업체명"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 업체명"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5일 이내 "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수탁 업체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 업체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4.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공단"은 "수탁 업체명"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 업체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수탁 업체명"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 업체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은 "수탁 업체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 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 업체명"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 업체명"은 제4조의 위탁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공단"에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 업체명" 또는 "수탁 업체명"의 임직원 기타 "수탁 업체명"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위탁 또는 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 업체명" 또는 "수탁 업체명"의 임직원 기타 "수탁 업체명"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 업체명"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수탁 업체명"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가명 정보 위탁 시) ① "수탁 업체명"은 가명 정보 처리 사업을 수탁받았을 때, 가명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재식별 시도하면 안 된다.

② "수탁 업체명"은 가명 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견 시 5일 이내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수탁 업체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국민연금공단 00실)

(인)

○○시 ○○길 ○○

성명 :

수탁자(수탁 업체명)

○○시 ○○길 ○○

성명 :

(인)

[붙임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3

(제11조, 제13조, 제14조 관련)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 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 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 (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 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 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 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³⁾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 도록 설계	인증 관리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 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관리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78도 관리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고
1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	
		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2	코드 삽입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	
		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	
		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_	이어레케 머러시 사이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	
5	운영세세 명명어 잡힙	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	
		약점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신뢰되지 않는 URL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7	주소로자동접속 연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8	개체 참조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 , , , , , , , , , , , , , , , , , ,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	
9	XML 삽입	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	보안약점	
10	IDVD YFOJ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	
10	LDAP 삽입	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1111220112	허용하여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	
13	HTTP 응답분할	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	
		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H이기느 겨저에 사요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	
17	포맷 스트링 삽입	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 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 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 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 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 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 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 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 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 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 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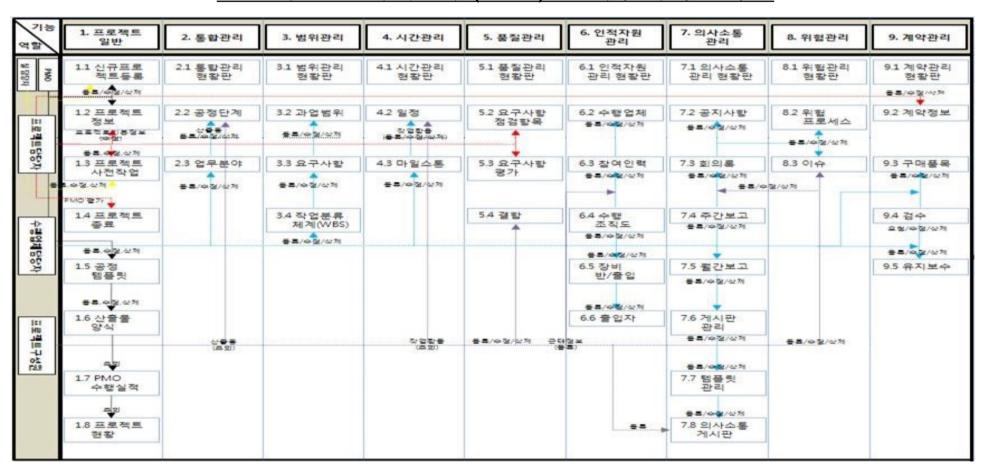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데이터 정보 노출	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 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 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붙임 6]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 관리범위 및 역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	에 따른 정보시스템	템 보완 개발
Canada e e na 21 de actuar a escada a part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걱정		MENE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구 분 사업규모 ① 생산성 ② 1인 총 투입기간 ①/② 투입인력 ③ 전체개발기간 (①/②)/③)	산출내역 833.5FP 19 43.86개월 7명 6.2개월	6.2개월
	추정사업기간	6,2개월	
②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작정	산출내역 0.4개월 3.6개월 2개월	6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공단에서 '23년 수행된 '두루누리 고시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발 사 과업 변경(환수, 공공 재정 환수법 사업 기간 산정	6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부 특이사항 없음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 유사 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적정 사업기간
	6개월이 적정함 *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	6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곤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 위 원 = 위 원 = 위 원	위 : - 기 위 :		트웨어 개발 19일 - 나무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국민연금/2024-04-19 08:44:22/디지털전략실 디지털기획부/4b61c488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붙임 8]

	소프트	트웨어서	나업 영향평가 결과서	1		
	사업명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사펴서 ■ 시어바즈				
	주요 내용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개정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적기에 개발 완료하여, 제도 안정화 도모 및 차질 없는 연금 업무 지원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4년 6월 ~ 2024년 12월				
1. 기본정보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02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구분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2000		①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구분		예상 사용자수		
2. 운영계획	사용자	■ 내부 직원		350명		
	(복수선택 가능)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3. 민간	※「없음」에 하	배당하는 경	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소프트 웨어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	어	
시장침해	0					
가능성	0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4. 사업의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가능)	(기여 방안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2024 년 3 월 19 일 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인)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완 개발

나. 예산액: 총 415.977.877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180일(6개월)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 2호 해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178(2024.2.15.)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 지침 변경 안내"
 -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 2호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 '24.6.30.일까지 입찰 공고되는 계약분
- 본 사업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법령의 적시 시행과 운영의 조기 안정화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업무 지연시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성 저하 및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낭비될 수 있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